



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(기획예산처, 2006년 11월 17일)

1. 국가R&D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해야

- 국가R&D사업 국내특허, 과기부 28% 산자부 23% 중복신고
- 2007년도 국가&D사업 예산 10% 삭감 필요

2. Top-Down 예산편성 후

부(付)·청(廳)간 예산 빈익빈 부익부 심각

- 부(付)는 최대 37.3% 증가한 반면 청(廳)은 최대 22.2% 감소
- 예산증가를 연도별로 1.4% 감소에서 123.2% 증가까지 널뛰기 뛰듯 다양

3. 정부, 부담금 5년 사이 63.6% 증가한 11조 4,000억원 징수

-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년 사이 9,300% 증가한 1조 3,000억원 징수

4. 방만한 공기업 운영, 국가 경쟁력 확보는 만나라 이야기

- 공기업 25개 사장, 3년 임기 채우면 백만장자 된다
- 한국산업은행 총재 연봉 7억, 한국수출입은행장 연봉 6억

5.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 반드시 개선해야

국가R&D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해야
- 국가R&D사업 국내특허, 과기부 28% 산자부 26% 중복신고 -
- 2007년도 국가R&D사업 예산 10% 삭감필요 -

□ 문제점 & 질의

- 2006년도 정부의 R&D예산은 8조 9천억 원이고, 이중 과기부와 산자부의 R&D예산은 정부 전체 R&D예산의 약 46%에 해당하는 4조 2천억 원임.
-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2003~2005년도 과기부 및 산자부의 연구성과로 도출된 국내특허의 성과실태를 분석한 결과,
- 1개의 특허를 ▲첫째, 2~6회까지 부풀려서 중복신고하거나 ▲둘째, 부청 내 다른 사업에 중복신고하는 경우 ▲셋째, 타 부청의 사업에 중복신고하는 경우와 ▲심지어는 존재하지도 않은 가짜특허를 연구성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전체 특허 대비 과기부 약 28%, 산업자원부가 약 23%로 조사되었음.
- 따라서 국내특허의 성과가 부풀려져 신고 되고, 통계도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었음. 이렇게 많은 중복신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자가 고의적,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신고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.
- 국가 R&D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2개 부·청 중 R&D 투자 규모가 1, 2위를 차지하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이 지경인데도, 기획예산처는 2004년 이후 R&D예산을 매년 10% 이상씩 증액시켰고, 올해에는 14%나 증액하였음.
-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는 ‘성과중심과 투자효율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’을 ‘국가 R&D투자부문의 정책기조’로 삼고 있으며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방향도 ‘전략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용’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음.
- 그러나 본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R&D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검증 없이 R&D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는데, 어떤 근거로 국가 R&D예산을 매년 10% 이상 증액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.

- 정부 R&D예산의 약 50%를 차지하는 과기부와 산자부의 특허가 약 30%가 ‘중복신고’되었다면 ‘중복투자’도 그만큼 많다는 증거인데, 그렇다면 2007년도 R&D예산은 10%를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기획예산처는 토목공사 500억원 이상, 건축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‘총사업비 관리 대상 국책사업’이라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, 항공·우주사업 등 많게는 수백억원에서 적게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R&D사업도 수두룩한데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위원은 100억원 이상의 정부 R&D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절감과 R&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의원은 특허 출원시 정부지원의 출처 즉 ‘자금을 지원한 정부기관의 명칭, 계약번호’를 기재하도록 하는 미국의 GI제도와 같이 우리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허출원시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등 정부지원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, 연구성과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행특허를 조사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R&D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따라서 장관께서는 과기부와 특허청과 협의하여 미국의 GI제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여 10조에 달하는 국가 R&D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Top-Down 예산편성 후 부(付)·청(廳)간 예산 빈익빈 부익부 심각
- 부(付)는 최대 37.3% 증가한 반면 청(廳)은 최대 22.2% 감소 -
- 예산증가율 연도별로 1.4% 감소에서 123.2% 증가까지 널뛰기 뒤흔 다양 -

□ 문제점 & 질의

1. 부(付)는 최대 37.3%까지 증가한 반면, 청(廳)은 최대 22.2%까지 감소

- ‘정부 부처’와 ‘외청’간의 예산규모가 톱다운 방식이후 큰 규모의 격차가 있어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의 공정성이 우려됨.
- 정부 주요 부(付)와 청(廳)인 국방부와 병무청, 과학기술부와 기상청,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, 농림부와 농촌진흥청, 그리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톱다운 방식 전·후년도의 예산 증가률을 비교·분석해 본 결과, 톱다운 방식도입 후 ‘부(付)’에 비해 ‘외청(外淸)’의 예산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.
- ▲국방부와 병무청의 경우, 2004년도 예산증가율이 각각 7.4%와 6.1%이던 것이, 톱다운 방식 도입 후인 2005년도에는 각각 12.9%와 4.1%로, 톱다운 방식 도입 전년도에는 증가율이 비슷하였으나 톱다운 방식 도입 이후 그 격차가 무려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▲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의 경우, 톱다운 방식 도입 이후 각각 37.3%와 15.7%로 기상청에 비해 과학기술부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▲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경우, 톱다운 방식 도입 이후 문화관광부가 2.2%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문화재청은 오히려 2.4%가 감소되었음.
- ▲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경우, 각각 10.7%와 4%로 농림부가 2배 이상 증가되었고 ▲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톱다운 방식 도입 이후 산업자원부는 10.1% 증가율을 보였으나 중소기업청은 오히려 22.2%나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.

〈표-1〉 정부 주요 부와 외청의 Top-Down 도입 전·후 예산증가율 비교

구 분		2004년	2005년 (단위 : %)
국방부	국방부	7.4% 증가	12.9% 증가
	병무청	6.1% 증가	4.1% 증가
문광부	문광부	4.3% 증가	2.2% 증가
	문화재청	3.5% 증가	2.4% 감소
농림부	농림부	2.6% 증가	10.7% 증가
	농촌진흥청	6.8% 증가	4% 증가
산자부	산자부	1.2% 증가	10.1% 증가
	중소기업청	13% 증가	22.2% 감소
과기부	과기부	6.8% 증가	37.3% 증가
	기상청	13.1% 증가	15.7% 증가

(자료출처 : 2006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제출자료)

-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톱다운 방식 도입이후 ‘외청’은 ‘해당 부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바, 이러한 예산편성이 지속된다면 톱다운방식의 도입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됨.

2. 예산증가율 연도별로 1.4% 감소에서 123.2% 증가까지 널뛰기 뒤흔 다양

- 아울러 톱다운 방식 도입 이후 부처별, 연도별 예산증감폭이 작게는 ‘1.4% 감소’에서 크게는 ‘123.2% 증가’까지 예산의 증감변화가 심하게 나타남.
- 부처의 연도별 예산증감폭도 ▲통일부의 경우,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123.4% 증가한 반면, 2007년에는 0.2% 증가에 그친 반면 ▲농림부의 경우,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10.7% 증가했고 → 2006년에는 1.6% 증가 → 2007년에는 4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즉, 부처별로 연도별로 그리고 연도별 부처의 예산이 널뛰기 뒤흔 증감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.

〈표-2〉 Top-Down 도입 후 주요 부처의 연도별 예산 증가율 현황

구 분	2005년	2006년	2007년
통일부	123.2% 증가	27.1% 증가	0.2% 증가
산업자원부	10.1% 증가	1.7% 증가	22.1% 증가
과학기술부	37.3% 증가	13.3% 증가	9.2% 증가
문화관광부	2.25% 증가	10.0% 증가	3.4% 증가
농림부	10.7% 증가	1.6% 증가	4% 감소
보건복지부	2.4% 감소	9.9% 증가	15.1% 증가
정보통신부	8.2% 증가	1.4% 감소	6.8% 증가

(자료출처 : 2006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제출자료)

- 톱다운 방식 도입이후 ▲‘부’와 ‘외청’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▲연도별 예산증감에 대한 변동 폭이 한 두 개 부처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대부분의 부처에서 심한 변동 폭을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의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톱다운 방식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, 톱다운 방식에 대한 성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톱다운 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, 부담금 5년 사이 63.6% 증가한 11조 4,000억원 징수
-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년 사이 9,300% 증가한 1조 3,000억원 징수 -

□ 문제점 & 질의

1. 정부, 부담금 5년 사이 63.6% 증가한 11조 4,000억원 징수

- 현재 정부가 징수하고 있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의 징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음.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, 2001년도에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10%이상 증가를 거듭한 결과, 2005년도에는 2001년 대비 63.6% 증가한 11조 4,000억원에 이르고 있음.

<표-1> 연도별 부담금 징수 현황

구 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징수금액 (단위 : 억원)	70,892	78,215	91,831	100,415	114,296
증가율	46.2% ^{주1)}	10.4%	17.4% ^{주2)}	9.3%	13.8%

주1) IMT-2000 일시출연금(1조3천억), 전기요금에서 분리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(3,754억) 제외 시 11.6%

주2)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(6,249억) 제외 시 9.4% 증가

(자료출처 : 2006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제출자료)

-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과제와 관련된 원인자·수익자 등 특정인에만 부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,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석유의 수입, 판매부과금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임.

2. 정부,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년 사이 9,300% 증가한 1조 3,000억원 징수

-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2001년도에 138억원이던 것이 → 2005년도에는 무려 9,300%나 증가한 1조 3천억에 달하고 있고, 석유의 수입·판매부과금도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음.
- 전국 성인 남성만 해도 49.2%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데,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반(49.2%)이 ‘특정인’이라고 할 수 없음.
- 즉, 담배제조사가 납부하여야할 세금 1조 5천억원을 전국의 흡연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, 석유류의 경우도 정유회사가 감당해야할 세금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납부하고 있는 것임.
- 부담금이 제정 취지에 따라 원인자·수익자라는 특정인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조세정의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.

3. 국가재정위해 국민을 불모로 징수하는 일부 부담금은 반드시 폐지해야

- 본 의원은 일부 부담금의 경우, 국가재정을 위해 국민을 불모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,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지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석유의 수입·판매부과금 중 소비자부담부분은 반드시 폐지하고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제조사에 해당 과세를 징수해야한다고 판단되는바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.

***참고자료 <부담금관리기본법> 제8조에 의하면,**

기획예산처장관은 ▲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, 부과실태,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야 하고 ▲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.

-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하고,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획예산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.

방만한 공기업 운영, 국가 경쟁력 확보는 댄나라 이야기

- 공기업 25개 사장, 3년 임기 채우면 백만장자 된다 -
- 한국산업은행 총재 연봉 7억, 한국수출입은행장 연봉 6억 -

□ 문제점 & 질 의

-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,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, 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맞고 있음.
- 2005년 말 감사원의 금융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▲무분별한 임금인상 및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 ▲무원칙한 수의계약 남발 ▲퇴직직원 자리보전용으로 자회사 운영 등 방만한 경영이 드러나 본 의원은 기획예산처가 정한 '5대 정책목표'의 목표 중 '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과 혁신'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.
- 국제기준에 맞게 공공부문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성과를 지속 향상시켜야 할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혁신과 개혁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공기업의 방만 운영을 방치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.
- 정부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, 경영합리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정도의 중요 공기업에 대해서 ▲정투법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) ▲정산법(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) ▲민영화법(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)을 제정·적용·관리해오고 있으며, 위 3개 법률 적용대상 공기업은 109개임.
- 정부가 법률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음. 이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주요 공기업의 경영 방만, 특히 기관장과 감사의 과도한 연봉 때문임.
- 3개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고 있는 109개 기업 중 기관장 연봉이 2억 이상인 기업이 무려 18개 기업에 이르고 있음. 3개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공기업까지 합하면 총 25개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남.

- 3개 법률의 적용은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한국수출입은행장 연봉은 각각 7억원과 6억 3천만원으로 3년 임기를 채우면 관공비를 제외하고도 21억원과 19억원을 수령하게 됨.
-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들의 평균소득 월 245만원 중 100만원을 저축한다하더라도 1억원을 모으려면 족히 8년은 소요됨.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사무총장의 연봉도 22만 7천불에 불과(약 2억 2000만원 가량)하고,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도 2억원이 채 안됨.
- 물론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도와 성과 등등에 따라 연봉은 정해지는 것이고, 무조건 연봉의 액수만을 놓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 운영과 고액연봉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장관은 공기업 기관장 연봉조정방안, 현재까지의 공기업 혁신성과, 그리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.

실효성 없는 실업대책 반드시 개선해야

□ 문제점 & 질 의

-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‘일자리 지원사업비’로 2003년 6천6백억원 → 2004년 1조 6백억원 → 2005년 1조 3천억원 → 2006년 8월 기준, 1조 1천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남. 즉, ‘일자리 지원사업비’의 2003년 대비 2006년 예산은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임.
- 통계청에 의하면 2002~2005년도 연도별 실업률은 각각 2002년 3.3% → 2003년 3.6% → 2004년 3.7% → 2005년 3.7%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거나 정체된 상태임.

<표-1> 연도별 실업률

구 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실업율	3.3%	3.6%	3.7%	3.7%

(자료출처 : 2006년 통계청 국정감사 제출자료)

- 정부는 실업률 제고를 위해 그동안 수조원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십만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실업률은 여전히 3%대에서 머물고 있음.
- 매년 1조원 이상의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실업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.

- 즉,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단순 업무 중심의 쉬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계절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에 따라 실업률의 진폭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임.
- 정부 실업 대책이 실적 중심의 수치 만들기에 급급해 일자리의 질적 우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양적 제공에 치중한 나머지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한 실업의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임.
- 본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실업대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근로의욕을 오히려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‘밑빠진 독’ 상에 추천하고 싶음.
- 본 의원은 단순직, 일용직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치중해 온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철저히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.